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97명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입소가능 인원을 정한다.
3. 모집방법은 노블레스실버케어 인터넷 블로그 광고, 유튜브 광고,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 (이용대상)

- ①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2. 대표(또는 시설장)이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로 인해 요양등급을 받기 전 일시적인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수급자
- ② 노블레스실버케어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입소계약

제3조 (계약 목적)

-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 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위 제②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등급외 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⑤ 제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입소자의 권리,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장 이용료

제7조 (이용료)

-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또는 시설장)가 따로 정한다.
-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입소자나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고, 운영규정 뒷면에 [별표 2]로 첨부한다.

제8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바로 이용료 계산에 적용한다.
 -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납부)

- ① 입소자나 보호자는 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알림톡,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노블레스실버케어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도 가능하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9.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가족 및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의료기관 이용 비용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 ③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 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 ④ 침상 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및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 시작으로 보고 제재 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한다.
- ⑤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특별침실 이용료는 동의 절차를 거쳐 비용부담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 ⑥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12조 (의료를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처리절차)

- ①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8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③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 ④ 시설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의 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 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⑥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한다.

제5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5조 (보험가입)

시설의 장은 제20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